

#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8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1월 23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“이산가족”에 대한 지역적 범위를 적용하고, 이산가족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“이산가족”에 대한 지역적 적용 범위를 반영함(안 제2조).
-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제2항 신설).

##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중 “이산가족을 말한다.” 를 “이산가족 중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” 로 한다.

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남북 이산가족” 이란 「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<b>이산가족</b> 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남북 이산가족” 이란 「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<b>이산가족 중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</b>
제5조(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) <b>시장</b> 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1.~6. (생 략)	제5조(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) ① <b>시장</b> 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1.~6. (제정안과 같음)
<b>&lt;신 설&gt;</b>	② <b>시장</b> 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남북 이산가족”이란 「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중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시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) 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
2.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

3.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경과를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

2.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위로 사업

3. 남북 이산가족 역사문화 보존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

4.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

5.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사업

6.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